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지식재산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출원인·권리자 등)의 전체 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자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전체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 시행령 일부 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

1) 현행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해당 자연인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전체 주소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음.

-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산으로 공보에 게재된 개인주소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가

- 공보에 공개된 자연인 전체주소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접촉 및 인재 유출 시도 증가 등 기술유출 위험 우려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 확대 요구증가

- 부분주소 게재 비율: '21년 1.5% → '25년 9.9%로 지속 증가
 - 부분주소 게재 찬성 비율: 92%^(24년)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 확대
 - 현행 전체주소 원칙하에서 신청 시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변경신청 발생 및 행정비효율 초래
- 2) 현행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변경함
- 3) 상표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출원인의 행정적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부분주소 게재 비율이 '21년 1.5%에서 '25년 9.9%로 증가하는 등 제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표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변경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14조, 제19조)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출원인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를 원칙으로 게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 단서”를 “제2항”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인인 상표권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표권자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1호 단서”를 “제3항”으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연인인 출원인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 공고 사항) ① 법 제82조제3항 에서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 공고 사항) ① ----- ----- ----- ----- -----.		
1. 상표권자의 성명과 주소(법 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 업소의 소재지). <u>다만, 자연인 인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u>		1. ----- ----- -----.		<u><단서 삭제></u>
2. ~ 16. (생 략) <u><신 설></u>		2. ~ 16. (현행과 같음)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 라 자연인인 상표권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주소의 일부 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표권자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 청의 방법·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 ----- ----- -----.		
제19조(상표공보) ① (생 략)		제19조(상표공보) ① (현행과 같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출원인의 주소는 그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2. ~ 15. (생략)

<신 설>

③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주소의 게재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음)

② _____

1. -----

-----, <단서 삭제>

2. ~ 15. (현행과 같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연인인 출원인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연 락 처	(042) 481 - 3570